

# 상호협력협약서

경상북도교육청과 국립안동대학교(이하 “양기관”이라 함)는 상호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.

## 제1조 (목적)

이 협약은 경상북도교육청과 국립안동대학교가 취약계층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, 협약기관의 인적·물적 자원을 교육 활동에 활용하는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협약 사항)

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취약계층(저소득층, 다문화가정 등) 청소년 지원 체제 구축
2. 취약계층 청소년(초·중·고등학생)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
3. 교직이수 재학생 교육실습 협력 관계 구축 및 교육봉사 활동 지원 활성화
4. 경상북도 교육행정기관 및 중등학교와의 교류 활성화
5. 중등교육 현장연구 수행 및 공동 학술활동 활성화

## 제3조 (권리·의무의 승계)

양 기관은 협약 체결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이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.

**제4조 (협약 효력)**

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하며, 해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면 통보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.

**제5조 (비밀유지)**

양 기관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.

**제6조 (기타)**

이 협약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7조 (협약서 보관)**

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장이 서명한 후 각 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7월 9일



경상북도교육감

임종식

임종식



국립안동대학교 총장

권순태

권순태